

第121回(臨時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第1號(附錄)
財務建設委員會會議錄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目 次

1. 서울特別市鐘路區仲介業紛爭調停委員會運營條例廢地條例(案) 1面
 2. 2002年度 서울特別市 鐘路區 區有財產 管理計劃 變更計劃(案) 3面
 3. 都市計劃(案)決定 및 變更決定 意見聽取 6面
 4. 서울特別市鐘路區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2面
 5. 主要懸案 業務報告(建築課, 公園綠地課) 15面
 6. 主要懸案 業務報告(土木課) 22面

1. 서울특별시종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869
----------	-----

제출년월일 : 2002. 5.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폐지이유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법률제6236호, 2000. 1. 28공포) 2000. 7. 29부터 시행되어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법제37조의3)가 삭제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종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현행제도는 존치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

3. 폐지근거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폐지(법률제6236호, 2000. 1. 28 공포)

4. 예산수반사항 : 필요없음

5. 폐지조례안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246호 서울특별시종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200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874
----------	-----

제출년월일 : 2002. 5.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종로구공유재산관리조례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사직공원 부지내 구민 문화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일환으로 부지를 구에서 매입하여 문화체육센터를 건립
- 구 혜화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하여 우리구 숙원사업인 다목적 구립운동장 건립

3. 관리계획(안) : 별첨

4. 관계법규

- 지방재정법제77조, 동법시행령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서울특별시종로구공유재산관리조례제36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5. 예산조치

- 종로문화체육센터 부지 : 2002년 예산 반영
- 혜화초등학교 이전부지 : 문화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시 특별교부금 지원요청

구 유 재 산 관 리 계 획 변 경 계 획

(2002년도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m²,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취 득	계	토지 건물 기타	2	3,826	375,370	5 10	14,710.50 6,138.28	10,134,187 239,250	7 10	18,536.50 6,138.28	10,509,557 239,250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2	3,826	375,370	5 10	14,710.50 6,138.28	10,134,187 239,250	7 10	18,536.50 6,138.28	10,509,557 239,250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 분	계	토지 건물 기타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200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소유 자주소·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수 량					
계				10,748,807				
1	소계			375,370				
	임야	사직동 산1-48	3,207.00	317,494	2002년 상반기	- 동 부지에 종로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여 문화체육공간 확충과 주민생활의 질 향상	국(산림청) 국(국방부)	
	임야	사직동 산1-56	619.00	57,876				
소계			10,373,437					
2	건물	명륜1가 1-27	6,138.28	239,250	2002년 하반기	- 혜화초등학교 이전부지를 매입하여 우리구 숙원사업인 구립 다목적운동장 건립	서울시교육감 서울시교육감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	
	학교용지	명륜1가 1-27	14,066.20	9,832,274				
	임야	명륜1가 1-36	154.00	56,980				
	임야	명륜1가 1-37	50.10	18,938				
	임야	명륜1가 7-68	215.20	160,970				
	임야	명륜1가 1-41	225.00	65,025				

3. 도시계획(안)결정 및 변경결정 의견청취

I. 안건명 :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안) 의견청취

II. 도시계획 결정(안) 조서

1.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안)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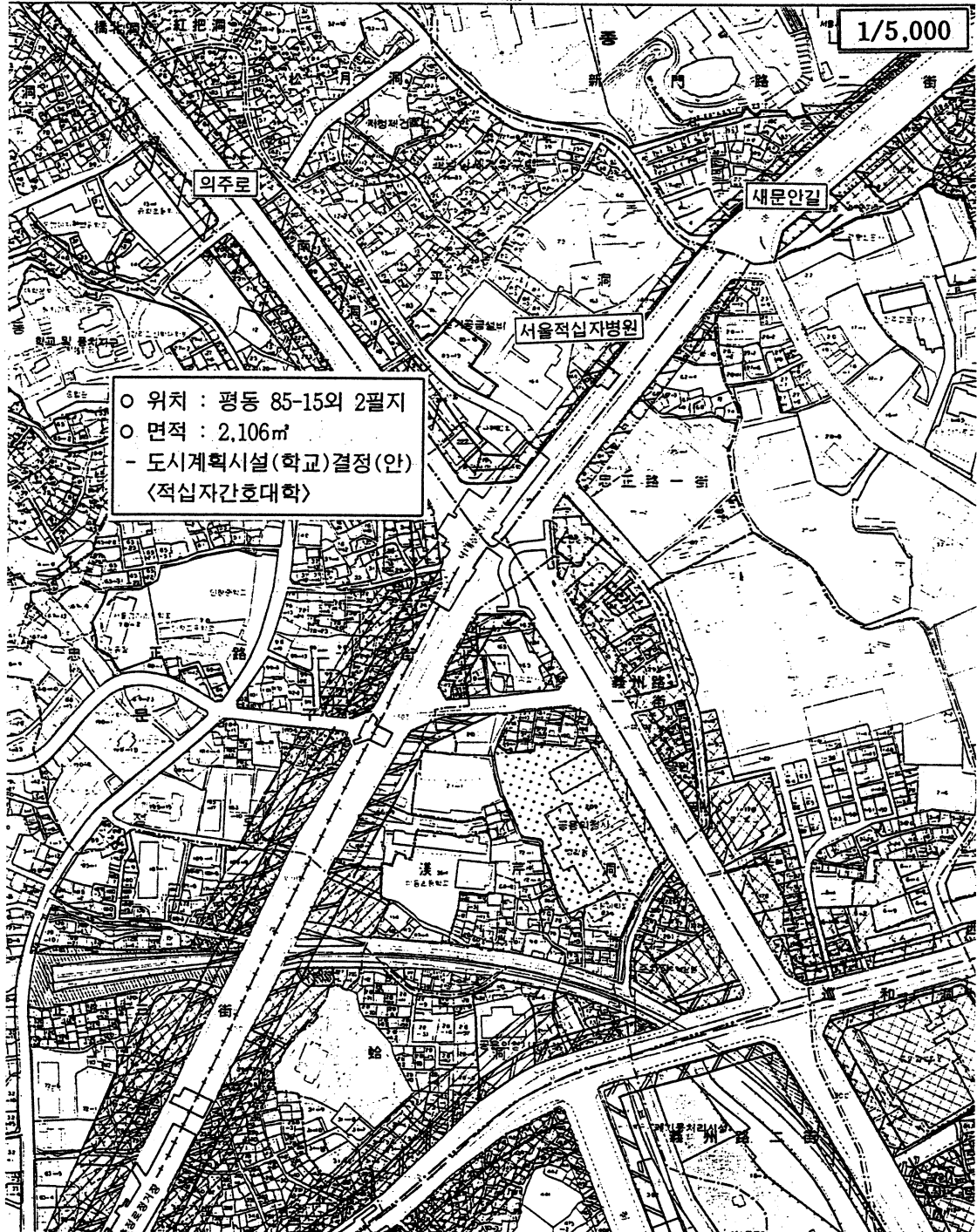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학 교	대 학	중로구 평동 85-15외 2필지	-	중)2,106	2,106	-	적십자 간호대학

III. 제안사유

1. 우리 구 관내 평동 85-15외 2필지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안)을 공람 공고하고
2.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 규정에 의거 우리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자 함.

따로붙임 : 위치도 1부. 끝.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안)

I. 안전명 : 도시계획시설(학교, 공원) 및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청취

II. 도시계획 변경결정(안) 조서

1. 도시계획시설(학교, 공원)변경결정(안)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학교	초등학교	종로구 필운동 32번지의 3필지	11,322	감)181	11,141	'87.2.17	상호 위치 변경 (사직동 1-2)
변경	공원	사직근린공원	종로구 사직동	118,710	-	118,710	'40.3.12	

2. 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조서

지역		시설명	위치	면적 (㎡)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자연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학교	종로구 사직동 1-2	181	면적 변경없는 위치 변경 (사직동 1-2)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공원			

III. 제안사유

1. 우리 구 관내 필운동 32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학교, 공원) 및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을 공람공고하고
2.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 규정에 의거 우리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따로붙임 : 위치도 1부. 끝.

도시계획시설 (학교, 공원) 및 용도지역 변경결정 (안)

1/5,000



- 위치 : 사직동 1-2
- 면적 : 181㎡
- 도시계획시설(학교)
- 도시계획시설(공원)
- 일반주거지역 → 자연녹지지역

- 위치 : 사직동 1-2
- 면적 : 181㎡
- 도시계획시설(공원)
- 도시계획시설(학교)
-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구의회 의견청취(안)

I. 안건명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공원) 및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청취

II. 도시계획 변경결정(안) 조서

1.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공원) 변경결정(안)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공공청사	-	종로구 삼청동 산2-16일대	2,701.2	-	2,701.2	'91.5.2	공원과 상호 위치 변경
변경	공 원	삼 청 근린공원	종로구 삼청동 산2-63일대	2,701.2	-	2,701.2	'40.3.12	공공청사와 상호 위치 변경 (삼청근린공원 A=378,440㎡)

2.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조서

지 역		시설명	위 치	면 적 (㎡)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공 원	종로구 삼청동 산2-16일대	2,701.2	면적 변경 없는 위치 변경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공공청사	종로구 삼청동 산2-63일대		

III. 제안사유

1. 우리 구 관내 삼청동 산2-63일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공원) 및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을 공람공고하고
2.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 규정에 의거 우리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따로붙임 : 위치도 1부. 끝.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공원) 및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1/5,000



- 위치 : 삼청동 산2-16일대
- 면적 : 2,701.2㎡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도시계획시설(공원)
- 일반주거지역 → 자연녹지지역

- 위치 : 삼청동 산2-63일대
- 면적 : 2,701.2
- 도시계획시설(공원)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4.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75
----------	-----

제출년월일 : 2002. 5. .
제 출 자 : 안재홍 의원의 4인

1. 개정이유

우리 구의 차량 총 대수가 5만 5천여 대를 상회하여 가구당 1대 비율로 차량을 보유하게 되어서 이제 차량은 사치품이 아닌 일반시민의 생활 필수품화 되어 있고, 차량 유지비용도 종전의 특별소비세 개념에서 일반시민의 생활안정 비용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어서 차고가 없는 일반 서민의 차량 유지비용의 경감 차원에서 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비용을 우선 경감하여 서민 가계에 도움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월 주차요금 완화(제2조제1항의 [별표1]중 표 하단)
 - 현행 : 40,000원
 - 개정 : 35,000원

3. 개정근거

-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제14조

4. 예산수반사항 : 필요없음

5.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표 다음의 ※ 내용 중 “월 정기권은 4만원으로 함”을 “월 정기권은 3만 5천원으로 함”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1]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 (제2조제1항 관련)</p> <p>【표】(생략)</p> <p>※5급지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이 주·야간 을 모두 이용할 경우 월정기권은 4만원으로 함</p> <p>(비고) (생략)</p>	<p>[별표1]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 (제2조제1항 관련)</p> <p>【표】(현행과 같음)</p> <p>※ -----만 5천원 -----</p> <p>(비고) (현행과 같음)</p>

5. 주요현안 업무보고(건축과, 공원녹지과)

1. 연화정사(평창동 417-3,6호) 민원

연화정사는 2000. 8. 28 건축허가를 득하여 시공중 인근주민들이 증축의 목적이 낱골당설치에 있다는 민원과 동시에 건축법 위반사항을 들어 민원을 제기하여 공사중지중에 있던 중 위법사항이 해소되어 공사를 재개하였으나 민원인들의 건축 원천봉쇄를 위한 현장 시위로 현재 공사중단 상태임.

□ 건축개요

증축허가부분 : A(평창동 417-3호)

- 위 치 : 평창동417-3 연화정사(대표 이현주)
- 규 모 : 지하3층, 지상1층, 증축면적 427.50㎡
- 용 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 지역지구 : 제1종 전용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 증축허가 : 2000. 8. 28 (착공 : 2001. 2. 23)
- 현 공정 : 대지굴토공사 95% 완료

기존 부분 : B(평창동 417-6호)

- 위 치 : 평창동417-6 연화정사(대표 이현주)
- 규 모 : 지하1층, 지상2층, 증축면적 454.19㎡
- 용 도 : 종교집회장
- 사용승인 : 1999. 10. 21

□ 위법사항 및 시정내용

증축허가부분 : A(평창동 417-3호)

[위법내용]

- 1층 발코니 후면부분 샷시문 무단증축 약 12㎡
- 2층 발코니 무단증축 약 4.2㎡

[시정내용]

- 2002. 3. 26일 시정완료

기존 부분 : B(평창동 417-6호)

[위법내용]

- 지하1층 하부부분 무단증축 약 38.8㎡(부역)
- 지하1층 무단증축 약 33㎡(부역)
- 지하2층 무단증축 약 22.26㎡(417-3호와 연계부분)

[시정내용]

- 지하1층 부엌부분은 시정완료되고 나머지는 시정 조치중

□ 민원현황

- 일 자 : 2001. 1. 11
- 민 원 인 : 평창동416-9호 이정희외 1,618인
- 민원내용 : 위법사항조치 및 납골당설치반대와 건축허가취소요구

□ 민원처리

- 2001. 1. 4 : 위법건축주 고발 및 공사중지지시(착공계 미제출)
- 2001. 1.18 : 납골당설치 불가토록 조례개정 요구(민원인→서울시)
→ 장묘문화 개선 측면으로 보아 타당성 미흡함을 회신
- 2001. 1.30 : 민원내용인 장래 납골당설치가 예상된다는하여 건축허가취소는 불가함을 통보하고 위법 부분 시정시까지 기 공사중지 지시
- 2001. 2.19 : 위법건축물 표기 및 감리건축사 행정처분
- 2001. 8.27 : 위법건축물 시정촉구 지시
- 2002. 1.7 / 2.1 : 동절기 및 해빙기 안전조치 지시
- 2002. 3.26 : 중축부분(A)은 시정완료 공사중지 해제
- 2002. 4.12 : 사전공사 및 위법부분은 감리자 조치 및 건축주를
고발하고 안전공사 완료시까지 본 공사중지 통보
- 2002. 5. 8 : 민원해결을 위한 회의개최(연화정사,시공자,구의원,건축과,서대문경찰서)결과 5월30일 이후 납골당 철회의사에 대한 연화정사의 구체적인 답변제시까지 자발적 공사중지

□ 문 제 점

- 주민들은 연화정사 중축이 납골당설치를 위한 것으로 공사중지 및 건축허가취소를 요구하고 있으나, 현 건축허가사항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지하3층 주차장, 지하2층 이용원, 지하1층 의원)로 제1종 전용주거지역내에 적합한 용도로 허가된 사항으로 향후 납골당 설치예상을 전제로 공사중지 및 건축허가취소는 불가능한 실정임
- 주민들이 현재 건축 원천봉쇄를 위하여 현장시위함으로써 공사중단 상태이나 골토현장 장기 방치 시 향후 안전사고가 우려됨

□ 대 책

- 5월30일 납골당설치에 대한 연화정사측의 구체적인 답변 제시까지 자발적 공사중지
- 건축에 대한 향후방안 및 안전대책 강구하기 위하여 주민들과 건축관계자간 협의를 적극 유도하고,
- 향후 납골당으로 설계변경시에는 주민의견청취 등 지역여건 및 정서를 고려하여 종합적 검토 처리

2. 평창동 180-2 삼각사 민원

평창동 180-2소재 삼각사는 2001. 2. 17일 증축허가 받아 건축중 인접지인 평창동180-2호(심재환)에서 무단증축 및 일조권저축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위법사항고발 및 공사중지지시 하였으나 공사중지 명령 취소소송를제기하고 계속공사로 민원이 지속되고 있음.

□ 건축개요

- 위 치 : 평창동 180-1 (대표 김하숙)
- 규 모 :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504.52m²(+26.41m²)
-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 집회장)
- 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
- 증축신고 : 2001. 2. 17 (착공신고 : 2001. 5. 2)
- 현 공정 : 골조공사 완료(약 85%)

□ 민원현황

- 민원 제기일자 : 2001. 6. 20
- 민 원 인 : 평창동180-1 심재환 외 다수(송원빌라 입주자)
- 민원내용 : 증축신고내용과 달리 무단증축하여 일조권저축

□ 민원처리 경위

- 2001. 6. 27 : 건축주 고발 및 공사중지 지시(무단증축 51.84m²로 일조권 저축)
- 2001. 8. 29 : 이행강제금 부과(5,339,520원)
- 2001. 9. 25 : 공사중지명령취소청구 소송제기
- 2002. 1. 29 : 공사강행으로 공급거부(단수, 단전화)조치 의뢰
- 2002. 2. 27 : 법원측에 조속한 판결 촉구

□ 문 제 점

- 정북방향의 일조권 위반사항은 인접지인 민원인에게 보상등으로 동의를 구하면 적법처리되는 사항으로 법원에서도 상호중재를 유도하고 있으나 금액 문제로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하여 민원야기(민원인 : 5,000만원 요구, 건축주 : 3,000만원 보상가능)

□ 대 책

-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중재와 협의를 유도하고 중재 불가로 법원 판결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지속적 행정조치

- 公園綠地課 所管 -

1. 중앙빌라 절개지 사면 공사

- 신영동 산7번지 일대(중앙빌라, 자하주택 뒷산) -

- 재해예방을 위해 공사진행 중 일부 이행조건 미이행 및 민원으로 공사중단하고 사업면적 축소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가 제기되어 추진되고 있음

□ 사업현황

- 사업명 : 재해위험 절개지 사면 예방공사
- 사업위치 : 신영동 산 7번지 일대
- 사업면적 : 1,800㎡(길이120m × 폭15m)
 - 자하주택 뒷산 약 50m, 중앙빌라 뒷산 약 70m
 - 계단식(3단)으로 압반 굴착작업 시행
- 사업시행 : 신영동 산 7번지 토지소유자(김 수)
- 근거 : 재난관리법 제23조 의거 명령에 의거
- 공사기간 : 2001.10.8 ~ 2002.1.4

□ 추진사항

- 2001. 3. 2 : 절개지 붕괴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요망
(부암동장 → 김 수 : 신영동 7번지 소유자)
- 2001. 8. 28 : 사업정비 신청(길이120m × 폭20m)
(김 수 → 종로구)
- 2001. 9. 13 : 사업시행 조정 통보(길이120m×폭15m)
(종로구 → 김 수)
- 2001. 10. 5 : 공사착공계 접수(김 수 → 종로구)
- 2001. 10. 9 : 공사 착공(진입로 및 자하주택 뒷편 정리 작업)
- 2001. 10.11 : 자하주택 주민설명회 무산(김 수 설명)
- 2001. 10.12 : 공사중단 및 이행조건 이행지시(종로구 → 김 수)
 - 이행조건 중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리자(감독관)을 선임”이 이행되지 않고, 환경관련 신고필증사본 등을 조속 제출, 조속히 주민설명회 실시 전까지 공사 중단
- 2001. 10. 13 : 자하빌라 김경숙외 44인 공사관련 의견 제출
 - 자하빌라 뒷산 시행구간 시공된 부분은 원상복구 및 일부구간 제외요청
- 2001. 10. 23 : 중앙빌라 자치회장(권영록) 의견 건의
 - 중앙빌라 시행면적 범면 안전처리와 녹생토 및 조경 식재 등 통한 원상복구
 - 나대지(진입로 부분) 맨홀 확장 설치와 배수관 확장 설치
 - 중앙빌라 3-5동 부분 락볼트, 낙석방지망, 슛크리트 타설 공법으로 조치
- 2001. 10. 27 : 민원처리(종로구 → 사업시행자, 중앙빌라, 자하빌라)
 - 자하빌라 : 공사 시행면적에서 제외 및 원상복구, 추가 이의제기 없도록 통보
 - 중앙빌라 : 사업 시행자에게 주민간 원만한 협의 후 신청토록 하였음을 통보
 - 사업시행자 : 자하빌라 뒷산 50m 사업 구간에서 제외, 설명회 이전 시공된 부분 원상복구, 중

양빌라 3~5동사이 주민과 협의 후 추가 요청

- 2001. 11. 14 : 재해 위험 절개지 1차 관계자 회의 개최
 - 사업 시행자측, 중앙·자하빌라측과의 상충된 의견에 대한 원만한 합의 못함
- 2001. 12. 21 : 행정심판 접수(김 수 → 종로구청장)
 - 청구 취지 : 공사 중단 명령 및 공사 시행면적 일부 제외 처분 취소
- 2002. 1. 29 :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재결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001.10.12자로 서울 종로구 신영동 산7번지 재해 위험절개지 사면 재해예방 공사 중단명령 및 공사 시행면적 일부 제외 명령 등의 처분을 취소하고 공사기간을 연장한다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
- 2002. 1. 11 : 행정소송(집행정지) 제기
 - 청구 요지 : 공사 시행시 일부 이행조건 미이행에 따른 공사 중단 및 민원 제기사유로 일부공사 시공면적 제외 및 원상 복구명령은 부당함
- 2002. 3. 14 : 집행정지 결정(우리구 패소)
 - 결정문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2001.10.12자로한 서울시 종로구 신영동 산7번지일대 재해 위험절개지 사면 재해예방공사 중단명령 및 2001. 10.27자로한 같은 공사 시행면적 일부제외 처분은 이법원 2002구합1564호 사건의 판결 선고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 2002. 3.21 : 집행정지 항고포기 방침결정(변호사 의견)
 - 공사 중단 및 시행면적 일부 제외 처분의 효력을 1심판결 선고시까지 정지
 - 신청인은 공사를 중단된 기간만큼 연장됨.
 - 항고하더라도 결정의 집행력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어 신청인은 공사 시행.
 - 이사건의 중단명령, 시행면적 일부 제외 처분 등이 법률적 근거 미약, 행정 합목적인 이유도 부족하여, 이 사건 결정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함.
- 2002. 4. 1 : 재해 위험절개지 2차 관계자 회의 개최
 - 신영동 산7번지, 150-6번지 일대 정밀 구조 안전진단을 실시(비용부담 : 중앙빌라)하고 , 그 결과에 의해 공사 시행방법을 결정하여 사업 시행(비용부담 : 김 수)
 - 중앙빌라는 4월20일까지 진단비용에 대하여 답변.(현재 답변 없음)
- 2002.4.18 : 행정소송 판결(우리구 패소)
 - 판결 : 2001.10.12 한 재해 위험절개지 사면 재해 예방공사 중단 명령 및 같은 달 27 한 위 공사 중 시행면적 일부 제외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을 각 취소한다(법원 판결 요지)
 - 현장이 안전조치 필요성 인정 → 계단식 절토 공법 타당
 - 원고가 안전조치를 취하면서 사업 시행상에 위법하거나 권리침해 없었다.
 - 피고의 처분 근거가 없고 재량권 남용한 위법한 처분
 - 공사 후에 경관을 회복할 예정이어서, 자연경관 훼손 민원으로 처분은 위법
 - 공사 할 긴급한 필요성 있고 재난관리법이 안전조치 명령에 배치되므로 위법(변호사 의견)
 - 원고의 안전조치가 시행되고, 주민들이 수인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부합
 - 법원 판결이 타당해 보이며,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 2002. 4. 29 : 재해 위험절개지 3차 관계자 회의 개최
 - 2001.9.13 재난관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위험 절개지 정비토록 행정명령한 신영동 산7번지

에 대하여는 행정소송 결과 사법부에서도 위험 요소가 있음을 인정하여 사업시행자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예상되는 재해로부터 주민의 재산과 인명피해 예방을 위하여 기 행정명령된 구간의 공사를 조속히 재개토록 조치.

- 중앙빌라의 3~5동 위험 절개지 구간은 중앙빌라 측과 현재 사업시행자 측에서 각각 선임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합동 구조 안전진단반을 구성하여 우리구 주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비용은 중앙빌라에서 부담하고, 결과에 의거 현재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하며, 중앙빌라측과 사업시행자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시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우리구에서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

○ 2002. 5. 8 : 행정소송 포기방침 결정

- 법원에서 재난방지에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인 우기철에 유수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고,
- 2002.4.29 관계자 회의때 논의된 절개지 공사를 시행한다고 결정되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 우리구가 항소를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대로 공사를 시행 할 수 있어서, 항소 제기에 따른 실익이 없음,
- 담당변호사 의견도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 문 제 점

- 인접한 중앙·자하빌라 주민들의 공사 반대 민원발생
- 중앙빌라측의 안전진단비 부담 문제
- 중앙빌라 3~5동구간의 공사시행을 현재 사업시행자가 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사업시행 후의 일체의 사고 발생 등에 대한 면책 조건에 대하여 구청에서 공중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 대 책

- 중앙빌라 3~5동 미시행 구간 시공은 정밀구조 안전진단 후 결과에 따라 책임감리를 선임하여 시공토록 조치
- 행정대집행시 비용 문제는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

2.구기동 구기터널주변 마을도로 보수 포장 민원

구기동 구기터널 윗편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 국립공원내 주민들의 마을도로 정비관련 민원사항임

□ 현 황

- 건 명 : 마을도로 정비
- 사업위치 : 구기동 245번지의 6필지
- 도시계획사항 : 개발제한구역, 국립공원, 터널, 도로
- 사업추진 근거 : 개발제한구역로서 개발제한구역관리 규정에 마을공동사업일 경우 마을도로는 허가없이 가능한 행위
- 사업자 : 최승락(마을대표)
- 사업비 : 최승락 등 인접 주민 각출
- 통보일자 : 1997. 12. 16

□ 추진경위

- '97. 12. 4 : 도로보수와 관련 탄원서 제출 (최승락의 12명)
- '97. 12.16 : 민원회신 (도로보수는 허가없이 가능)
- 2001.7. : 마을도로 비포장으로 보수 완료
- 2001.7.15 : 집중호우로 도로부분 토사 유출
- 2001.7.24 : 최승락 수해복구와 도로 포장 요구
- 2001.8. 3 : 국립공원 관리공단 회신(시멘트 포장보다는 돌갈기 시공이 바람직함)
- 2002.4.12 : 도로의 공유지는 돌갈기로 시공하고, 사유지는 소유 주가 처리할 사항임을 회신

□ 문 제 점

- '97년 당시는 마을도로 보수를 요청하던 사항이 현재에는 마을도로 포장까지 요구하는 사항임
-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마을도로 포장을 반대하며 돌갈기 시공만 가능
- 현황상 구기동 245-1 도로용지에만 마을도로가 위치하지 않고 인접한 사유지에도 침범하여 마을 도로 현황측량이 필요
- 사유지는 소유주가 돌갈기 시공
- 돌갈기 시공을 위한 예산의 미확보

□ 대 책

-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공유지는 추경예산 확보 후 돌갈기 시공 예정
- 소요예산 : 23,000천원

6. 주요현안 업무보고(토목과)

□ 총 34건, 162억원 (신규 17건, 92억원, 이월 17건, 70억원)

○ 구 비 : 22건, 85억원 (신규 9건 30억원, 이월 13건 55억원)

○ 시 비 : 12건, 77억원 (신규 8건 62억원, 이월 4건 15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소 요 예 산						비 고
		구 비		시 비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총계	계	34	16,175	22	8,460	12	7,715	
	신규사업	17	9,215	9	3,000	8	6,215	
	이월예상사업	17	6,960	13	5,460	4	1,500	
도로건설	계	4	1,560	4	1,560			
	신규사업	-	-	-	-	-	-	
	이월예상사업	4	1,560	4	1,560	-	-	
보상사업	계	8	5,820	7	3,820	1	2,000	
	신규사업	1	2,000	-	-	1	2,000	
	이월예상사업	7	3,820	7	3,820	-	-	
하수 · 치수 관리	계	11	5,682	3	640	8	4,992	
	신규사업	8	4,262	2	600	6	3,662	
	이월예상사업	3	1,420	1	40	2	1,380	
도로관리	계	6	2,270	6	2,140	-	130	
	신규사업	5	2,200	5	2,100	-	100	
	이월예상사업	1	70	1	40	-	30	
도로조명	계	5	843	2	300	3	543	
	신규사업	3	753	2	300	1	453	
	이월예상사업	2	90	-	-	2	90	

□ 주요사업 세부내역

○ 도로건설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비고 (공정)
			계	구비	시비		
계 4건			1,560	1,560	-	이월 : 4건 (1,560) 신규 : 0건	
1 (이월)	성대후문~양현관간 도로개설공사	B=6m L=140m	500	500		2001.9.8~ 2002.5.31	보상 : - 공사 : 200 (97%)
2 (이월)	명륜4가 206~155간 도로개설공사	B=6m L=230m	300	300		2001.11.10~ 2002.10.31	보상 : - 공사 : 300 (45%)
3 (이월)	혜화여고주변 도로개설공사	B=5~6m L=100m	560	560		2001.12.21~ 2002.12.19	보상 : 310 공사 : 250 (20%)
4 (이월)	승인1동 61-59간 도로개설공사	B=6m L=230m	200	200		2001.12.21~ 2002.12.19	보상 : - 공사 : 200 (35%)

○ 도로건설 순수보상사업 현황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비고 (공정)
			계	구비	시비		
계 8건			5,820	3,820	2,000	이월 : 7건 (1,904) 신규 : 1건 (2,000)	
1 (신규)	대학로~충신시장간 도로개설공사	B=12→20m L=300m	2,000		2,000	2001.3~ 2002.12	20%
2 (이월)	누하동35~93간 도로개설공사	B=6~12m L=210m	1,800	1,800		2001.3~ 2002.12	이월 735백만원 (65%)
3 (이월)	창성동109~131간 도로개설공사	B=4m L=140m	470	470		2001.5~ 2002.12	이월 51백만원 (100%)
4 (이월)	통의동 70~35간 도로개설공사	B=6m L=160m	300	300		2001.12.21~ 2002.12.19	이월 183백만원 (40%)
5 (이월)	계동36~원서동76간 도로개설공사	B=6m L=70m	250	250		2001.12.21~ 2002.12.19	이월 191백만원 (100%)
6 (이월)	돈의동~묘동184간 도로개설공사	B=6m L=150m	500	500		2001.11.10~ 2002.10.31	이월 487백만원 (50%)
7 (이월)	승인2동411~324간 도로개설공사	B=6m L=110m	300	300		2001.11.10~ 2002.10.31	이월 224백만원 (100%)
8 (이월)	승인1동12-3~10-16간 도로개설공사	B=4m L=100m	200	200		2001.3~ 2002.12.31	이월 33백만원 (100%)
※ 명륜3가137-8 ~ 명륜4가 178-3간의 1개소 도로개설공사			(500)	(500)		2001.8~ 2002.12.31	1개소 보상완료 1개소 추경요구

○ 하수·치수관리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공사기간	공정
			계	구비	시비		
계 11건			5,682	640	5,042	이월 : 3건 (1,420) 신규 : 8건 (4,262)	
1 (이월)	효자배수분구 관거 종합정비공사(굴착)	하수관 개량 D=300~1000mm L=2,410m	1,000		1,000	2001.4.13~ 2002. 5. 30.	95%
2 (이월)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	소하천 종합계획 L=4.04km	40	40		2001.6.14~ 2002. 6. 30.	95%
3 (이월)	경북고등학교 주변 하수관거 긴급정비공사	하수관개량 D=800~1,350mm L=352m	380		380	2001.12.29~ 2002.6.26	70%
4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D=300~800mm L=1,200m	400	400		2002.3.1~ 2002.12.31	30%
5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V=1,000m ³	200	200		2002.3.1~ 2002.7.31	50%
6	효자배수분구 관거 종합정비공사(굴착, 비굴착)	하수관 개량 D=300~1200mm L=3,009m	2,525		2,525	2002.3.1~ 2002.12.31	20%
7	낙산공원~동승동129-140간 하수압거 개량공사	□1.2×1.2m L=180m	400		400	2002.3.1~ 2002.12.31	20%
8	종로1가~소격동55간 하수압거 보수공사	□5.2×2.5m L=200m	300		300	2002.3.1~ 2002.12.31	20%
9	청계천 복개구조물 준설	V=1,700m ³	100		100	2002.3.1~ 2002.7.30	95%
10	지하철 배출수 전용관로 설치공사	D=350mm 압력관 L=570m	287		287	2002.3.1~ 2002.12.31	보류
11	홍제천 준설공사	V=400m ³ L=200m	50		50	2002.3.1~ 2002.6.31	10%

* 市재해대책기금 추가 배정 현황 (서울시 하수계획과, 치수과)

- 청계천하상 준설공사 : 100백만원 (공사발주(5/6), 배정 4/6)
- 자동 음성정보 시스템 설치공사 : 75백만원 (공사발주(5/10), 배정 4/6)

○ 도로관리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공사기간	공정
			계	구비	시비		
계 6건			2,270	2,140	130	이월 : 1건(70) 신규 : 5건(2,200)	
1 (이월)	제설작업 용역	북악산길외 8개노선	70	40	30	2001.12.1~ 2002.3.20	완료
2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시설물39개소	300	300		2002.4.1~ 2002.12.31	40%
3	관내 도로보수공사	도로포장 A=300a	800	800		2002.4.1~ 2002.12.31	40%
4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	맨홀보수 100개소	100	100		2002.6.1~ 2002.12.31	입찰예정 (5/14)
5	제설작업 용역	북악산길외 8개노선	50	50		2002.12.1~ 2003.3.15	시기 미 도래
6	관내 도로굴착 복구공사	포장복구 151a	950	850	100	2002.3.1~ 2002.12.31	30%

※ 월드컵 대비 추가 예산배정 사업 (서울시 도로운영과 : 시굴착복구기금 등)

○ 간선도로변 보도정비공사 : 523백만원 (굴착기금, 년간단가포함 시행완료(5/6))

○ 동대문주변 도로정비공사 : 160백만원 (굴착기금(66), 특별교부금(94),
년간단가포함 시행완료(5/6))

○ 창경궁길/효자로 보도정비공사 : 200백만원 (굴착기금, 실시설계 발주(5/9), 배정 3/21)

○ 동십자각 지하보도보수공사 : 200백만원 (보조금, 실시설계 발주(5/6), 배정 4/1)

※ 월드컵 대비 동편의사업 : 165백만원 (자치행정과 : 국비보조금) - 시행중

○ 도로조명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공사기간	공정
			계	구비	시비		
계 5건			843	300	543	이월 : 2건 (90) 신규 : 3건(753)	
1 (이월)	가로등시설물 정밀점검 및 보수공사(동부)	분전함 48개소 가로등주 937개소	45		45	2001.12.24~ 2002.5.18	완료
2 (이월)	가로등시설물 정밀점검 및 보수공사(서부)	분전함 34개소 가로등주 958개소	45		45	2001.12.24~ 2002.5.18	완료
3	가로등 유지보수사업	가로등 3,421 분전함 148면	200	100	100	2002.3.1~ 2002.12.31	90%
4	보안등 유지보수사업	보안등 8,920등 보안등개량 150 보안등신설 200등	200	200		2002.3.1~ 2002.12.31	25%
5	울곡로 가로등 개량사업	가로등개량 52본	353		353	2002.3.1~ 2002.10.30	5%

